

# 2026년 농식품수출성장패키지 (공모형 추가 모집공고)

농식품 수출역량 및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우리 농식품 수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공모형 추가)」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6월 19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 1 사업 개요

### □ 신청자격

- 농식품(신선 및 가공)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 선적일(출항일) 기준으로 농·축산물(수산·임산 제외) 직·간접 수출실적을 인정하며,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를 기반으로 공사에서 자체 조회하여 지원 자격 등 확인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해당기업

※ 상호출자 제한기업은 참여 불가하며, 농협 및 농식품을 수출하는 그 소속회사(대규모기업 집단)에 해당하나 농협법에 따라 대기업 제한적용 예외, 지역농협, 품목농협은 참여 가능

- '23~'25년 중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 기업
- '23~'25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26년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된 기업(수출계약서 제출 필요) 신청 가능
- \* 단, 수출 예정 기업 중 '26년말 기준 수출 실적이 없는 경우 차년도 지원 불가
- '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추경) 선정업체(추경 단독) 신청 가능
- '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신청·공모형) 기 선정업체 신청 불가
- 타 수출 바우처 선정업체 신청 불가
- \*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농산업글로벌성장패키지(농어촌공사), 수산바우처(aT), 임산바우처(aT), 외식바우처(aT) 및 중복선정을 제한하는 기타 국가/지자체 사업

### □ 지원규모 : ○○개소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기업 규모 및 농식품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비율 및 배정한도 차등 적용
- 국고 지원비율 :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80%

□ 지원내용 : 사업메뉴 23개(붙임 3) 중 필요 메뉴를 배정 한도 내 자율 선택 사용 후 국고 지원 비율에 따라 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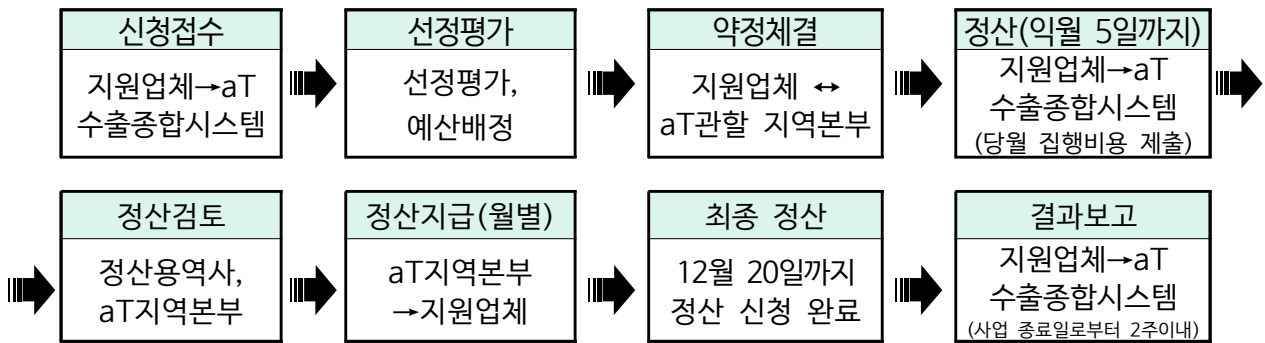
□ 배정액 : 아래 인정수출 기준 산출된 수출실적 기준 배정액 산출

**< 공모형 인정수출 기준 (배정모수) >**

- 최근 3년 내('23~'25년) 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 기준 농식품 수출액 (직·간접 인정)
- \* 가중평균 반영 : '25년 50% + '24년 30% + '23년 20%의 합
- 신선농산물 등 품목(붙임6)은 '26.5월까지의 수출실적을 '25년 배정 모수에 추가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26. 12. 20 까지

\* 단, 정산 인정기간 : '26.1.1.~ '26.12.20 (기간 내 비용집행 및 정산 신청 완료)



## 2 모집 신청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6. 7. 3.(금) 16:00 까지

□ 수출 구간별 추정 배정액 (예시이며, 신청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구분	①도전	③기본	④성장	⑤심화	⑥고도화
수출구간	20만불 미만	20만~100만불	100만~500만불	500만~1,000만불	1,000만불~
배정액	15백만원	15~45	45~150	150~200	240~

□ 신청방법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http://global.at.or.kr>)

- 로그인(신규업체 : 회원가입 필요) → 상단메뉴[사업신청] → 참가기업 자가 역량진단 실시 → 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공모형 추가) 모집공고 내 [사업신청] 버튼 클릭(기본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 □ 제출서류 목록

※ 사업신청을 위해 로그인 한 계정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한 경우만 유효

### [필수 제출서류(공통)] ※ 필수 서류 미비 업체는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① 참가신청서 \* 공고 내 별도 서식 준수
- ② 메뉴이용 계획서 \* 공고 내 별도 서식 준수
- ③ 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서약서 \* 공고 내 별도 서식 준수
- ④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 신청서류 간소화 시스템(aT One-click) 활용 제출 가능
- ⑤ 최근 2개년 ('24, '25) 재무제표 \* 신청서류 간소화 시스템(aT One-click) 활용 제출 가능  
-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가능
- ⑥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공고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에 한해 인정)
- ⑦ 온라인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공인인증서 필요) ☞ <https://tmydata.or.kr> \* 붙임 6 참고  
\*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를 기반으로 수출실적을 공사에서 자체 조회하여 지원자격 여부 등 확인

## 3 선정 방식

□ 선정방법 : 선정평가 기준표(붙임 4)에 따른 계량평가 100%

□ 결과발표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 확인방법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로그인 → 마이 페이지 → 사업 신청관리

### < 주요 일정 >

모집공고	신청마감	선정 및 배정	약정체결 및 사업개시
'26.6.19(금)	'26.7.3(금) 16:00	7월 중순	7월 하순

\* 상기 일정은 추진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 관할지사 및 문의처

관 할	연락처	관 할	연락처	관 할	연락처
서울경기	031-8060-6051 031-8060-6054 031-8060-6052	인 천	032-272-3007	강 원	033-920-1546 033-920-1548
세종충북	043-902-9525 043-902-9529	대전충남	042-389-5017 042-389-5019	전 북	063-904-5873 063-904-5875
광주전남	062-940-7013 062-940-7015	대구경북	053-218-4908 053-218-4913	부산울산	051-947-1083 051-947-1086
경 남	055-608-5803 055-608-5804	제 주	064-748-9477 064-900-8657	본사	061-931-0861 061-931-0862 061-931-0863

# 붙임 1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공모형) 신청 유의사항

##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국세·지방세, 4대보험 체납 기업 (최종 약정 체결시 완납증명서 제출 필요)
-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제재로 인해 제재 대상인 자/기업
  - \* 단, 제재기간 만료 및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대기업)
- '25년도 패키지 참가업체 중 협약체결 후 참가기업의 사유로 협약 중도 해지 또는 '25년도 패키지 운영 미비 2회 이상 적발로 차년도 신청 1년 제한벌칙 확정 업체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업 참가 제한 조치 업체 및 그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
- 중복선정 제한 사업에 선정된 업체
  - (aT 개별사업) 수출 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수산바우처, 임산바우처
  - (타 기관 수출바우처)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농어촌공사(종자,사료) 기타 지자체 사업 중 중복선정을 제한하는 사업

## <중복지원 제한>

- 동일증빙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 지원 불가 (위반시 환수 등 제재 조치)

## <메뉴 사용 제한>

- 사업자 선정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나, aT 개별 수출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내용 사용 제한이 필요한 메뉴
  - 글로벌 NEXT K-Food(스타트업) 선정업체는 패키지 메뉴(제품개발, 포장 디자인 개발, 샘플통관운송) 이용 불가

## <예산집행률 평가> 배정액 집행률 수준에 따라 익년도 패널티 부여

집행률	80%미만~70%이상	70%미만~60%이상	60%미만~30%이상	30%미만
패널티 (익년도 기본배정액)	20% 감액	30% 감액	50% 감액	참여 제한

## 붙임 2

##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사업메뉴

구분	사업메뉴	지원내용	
생산 · 수출 기반 (7)	① 수출컨설팅	수출역량 제고 및 수출확대를 위한 컨설팅(무역실무, 수출전략, 무역관세, 판로개척, ESG/GMETA, PPWR 등)	
	② 수출전문인력 양성	무역실무, 제품개발, 상품화, 인허가 등 제품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반에 걸친 임직원 수출역량강화 교육	
	③ 제품개발(기술도입)	레시피 개발,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제품 효능·성분 분석 등을 위한 외부기관 활용 용역	
	④ 해외인증등록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인증취득비·대행비)	
	⑤ 수출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보험료, 수수료 지원 (한변동·단기수출보험, 해외채권 회수대행, 수출신용보증, 국외기업 신용조사)	
	⑥ 법무·세무·회계 자문	수출목적의 해외 진출용 법무·세무·회계 분야 전문 컨설팅(해외현지 분쟁 해결지원 등)	
	⑦ 통번역	수출목적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전문 통번역업체를 통한 경우에 한함)	
수확후 관리 (4)	⑧ 선도유지제(장기저장제)	수출상품의 신선도 유지 및 장기 유통을 위한 파렛트커버, 이산화염소 스틱, 전처리제 등 외부위탁을 통한 제품 포장·용기 및 포장재 기능성 디자인 개선 및 개발(디자인, 동판 또는 금형제작)	
	⑨ 포장디자인 개발	- 수출용 제품명 표기 또는 수출용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시각적 요소를 반영한 제품 포장·용기 디자인 개선 및 개발(국문만 있는 경우 정산 불가)	
	⑩ 수출공동브랜드	- 공동브랜드 적용(수출통합조직협의회, 인삼김치 캐릭터 등) 수출전용 포장상자, 포장자재 구입비 등 - 신선농산물 통합조직의 수출공동브랜드 개발, 디자인 비용	
	⑪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	프리미엄 수출 상품의 공동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	
운송 및 통관 (5)	⑫ 샘플통관운송	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발송에 소요되는 운송비, 통관비, 수출신고필증 발급비	
	⑬ 물류 효율화	수출용 파렛트 구입비(목재 재질의 경우, 열처리 방역 인증 또는 열처리 가공한 것에 한함) 등	
	⑭ 항만, 공항 부대비용	해상	항만 이용시 발생하는 비용(서류발급비, 항만 인근 저온저장시설 이용료, THC 등) 및 APC(선별장) 입고 이후 유통지원 관련 비용, CFS 작업비, CA컨테이너 할증료 등
		항공	공항 이용시 발생하는 비용(서류발급비, 공항 인근 저온저장시설 및 상용화주 터미널 이용료 등), APC(선별장) 입고 이후 유통지원 관련 비용 등
	⑮ 현지 수입 등록 및 검사 지원	수출국 현지 수입통관 규정에 맞는 제품등록비, 라벨링, 식품검사비용, PPWR 대응비용(시험평가, 샘플발송, 기술문서 작성대행) * 검사기계 등 기자재 구매는 지원 제외	
	⑯ 긴급 무역현안 대응	중동사태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현안 해소에 필요한 대응 비용 지원	
판로 개척 (7)	⑰ 글로벌홍보	- 자사제품 및 브랜드 해외홍보를 위한 외부위탁을 통한 유인물 디자인 개발 및 영상물 제작 - 자사제품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소비자 대상 체험(시음·시식) 홍보 - 자사제품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각종 매체활용 홍보(메스미디어, 온라인몰 홈페이지 등)	
	⑰ 현지시장 개척	- 바이어발굴 목적으로 추진하는 현지시장 유통소비실태조사 등의 해외 출장(항공료) - 수출국 현지바이어와의 세일즈 상담을 위한 제비용(항공료, 숙박료, 현지차량, 장소임차비, 통역비 등) - 해외진출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해외 바이어·소비자 대상 제품 선호도조사 등 실시	
	⑱ 개별식품박람회 참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개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비용(임차비, 장치비 등 부스 운영비, 전시품 운송통관 등)	
	⑳ 해외바이어 초청	- 해외 신규 거래선 확보를 위한 유력 농식품 바이어 초청 지원(항공료) - 현지 바이어 초청 및 생산현장 팸투어시 발생하는 관련 제비용(항공, 숙박료, 차량비, 통역비 등)	
	㉑ 판촉 및 신규 입점비 지원	- 해외 유통매장과 연계한 오프라인 판촉 행사(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시식행사비) - 해외 온라인몰과 연계한 판촉 행사(홍보비, 마케팅비, 입점수수료) - 수출국 유력 현지 대형유통매장 및 온라인몰 신규 입점 및 등록비용 등	
	㉒ 수출상담회	- 웹 상품 카탈로그 제작, 통역비, 장소임차비 등 - 현지 바이어 대상 수출상품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비용(장소임차, 행사기획, 통역, 전시 및 시식 등)	
	㉓ 지사화 사업	수출국 현지시장개척 및 시장정착을 위한 제반비용(공유 오피스 임차, 마케팅 전문인력 고용비 등)	

\*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 판촉사업은 국내 수출업체에 지원(과거 국내공모 판촉 형태)

\* 연도중 사업메뉴의 추가 및 변경 등 필요사항 발생시 "농식품 수출사업 심의위원회(사업)"에서 결정

## **붙임 3**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공통 정산기준**

### **1. 용어의 정의**

- 「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이하 패키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총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자부담금의 합으로, 국고 대 자부담 구성 비율은 중소기업 9대 1, 중견기업 8대 2 로 한다.
  - “운영기관”은 패키지 참여기업의 평가와 선정, 약정체결, 점검, 예산 교부 및 집행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aT본사와 지역 본부를 말한다.
  - “참여기업”은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aT지역본부와 협약 후,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를 말한다.
  - “사업메뉴”는 참여기업이 패키지 사업추진 완료 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항목을 말한다.
  - “수행기관”은 운영기관이 일정한 자격 등을 평가하여 선정 및 지정한 기관으로 참여기업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전담기관”은 운영기관으로부터 특정 사업메뉴에 대해 수행기관의 선발과 관리 등의 서비스 총괄 관리를 위탁받은 각 기관을 말한다.
    - \* 해외인증등록(한국식품연구원), 수출보험(한국무역보험공사),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통합조직)
  - “정산용역사”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참여기업의 정산신청 분에 대한 제출증빙 검증, 정산검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정산인정기간”은 참여기업과 aT가 작성한 사업약정서 상 명시된 협약기간을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2026년 패키지 지원 사업의 기본 협약기간은 ‘26.1.1~’26.12.20로 한다.
- 본 정산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용어는 패키지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 2. 예산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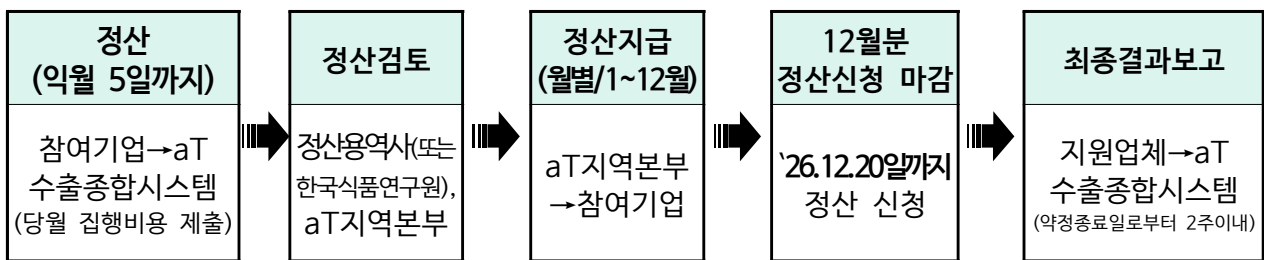
- 참여기업은 공동 및 사업메뉴별 정산기준에 따라 총사업비 기준으로 선 집행 후 사후정산을 요청하여야 하며, 선금 지급은 불가
  - 단, 수출보험 메뉴의 보험비용은 전담기관을 통해 자부담금만 집행
  - 정산신청 건 검토결과에 따라 정산승인 시 국고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정산집행액을 참여기업에 지급함
- 사업메뉴 단위 지원한도 및 별도 의무부여 현황

구분	내용
사업메뉴별 지원항목 및 한도	사업메뉴별 정산기준 참고 * 이용금액 또는 지원항목별 한도설정 ** [부록] 메뉴별 지원한도 일람표 참고
사업메뉴별 이용한도 제한	<b>(신청형 공모형)</b> 1) "현지 수입등록 검사지원 메뉴"의 한시적 물류부담 완화는 총 배정한도의 20~30% 제한 2) "긴급 무역현안 대응 메뉴"는 총 배정한도의 10% 제한 3) 2개 메뉴 집행한도 합산 최대 3억원 한도제한  <b>(추경)</b> <b>제한 없음</b> * 단, ① 현지 수입 등록 및 검사지원(한시적 물류부담 완화 등), ② 수출보험, ③ 항만·공항 부대비용, ④ 긴급 무역현안 대응 메뉴에 50% 이상 사용 의무
수출의무액 부여	① 해당 사업메뉴 : 판촉 및 신규 입점비 지원 ② 의무액 기준 : <u>총사업비 기준 정산신청액의 150% 이상 수출실적(㉔FOB기준 원화금액) 달성</u> 의무 부여 *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 완료기준) 필수 제출
현지시장 개척, 해외바이어 초청 사업메뉴 지원항목 및 한도	① 참여기업당 사업메뉴 사용횟수 제한없음 ② 항공료 : 총사업비 기준 인정되는 집행액의 1/2에 국고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지원 ③ 1회당 최대인원 : 2인으로 제한 * 바이어초청의 경우, 1회당 최대 인원 제한은 없으나, 소속회사당 최대 2인 한도

### 3. 정산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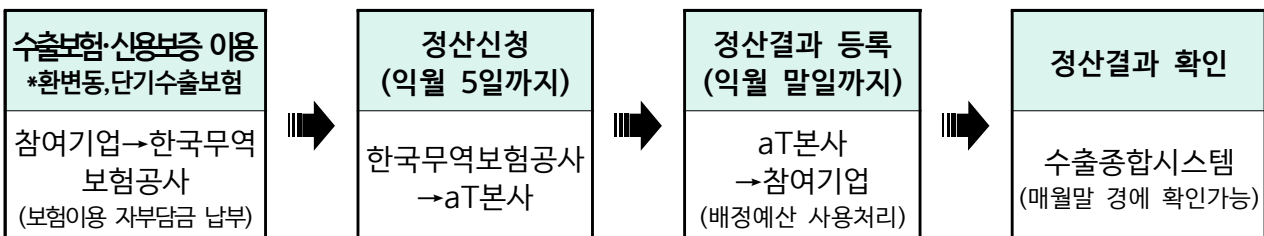
- (정산원칙) 참여기업은 정산 인정기간('26.1.1~'26.12.20) 이내에 선택한 사업메뉴의 추진시작 및 완료, 비용집행, 사업메뉴별 세부 정산기준에서 요구하는 적정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스템에 정산신청을 완료해야 함
  - \* 단, 해외인증등록은 예외적으로 인증서 발급일이 정산 인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 인정기간 전 등록 추진을 시작하였다더라도 정산신청 가능
- (정산신청기한) 수시 정산신청이 가능하며, 메뉴 사용 완료한(계약 만료일, 비용결제일 등)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최초 정산신청을 완료해야 함
  - \* 단, 정산 인정기간 마감일('26.12.20) 초과하여 정산신청 불가
- (정산거절) 운영기관(aT지역본부)에서는 참여기업이 정산 보완 요청에 불성실 이행하는 경우 정산을 거절할 수 있음
- (정산절차) 1차 정산용역사 및 2차 aT 지역본부 검토 후 정산승인 여부 결정 및 정산승인액 지급
  - 운영기관(aT지역본부) 및 정산용역사(또는 전담기관)는 참여기업이 제출한 정산 증빙자료에 대해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 매월 집행분에 대해 익월 5일까지 정산신청 시 동월 말일까지 정산결과 확정 및 정산승인액 지급 \* 정산 증빙 미비로 인한 보완 진행 시에는 예외로 함

#### <일반메뉴, 해외인증 이용 시>



#### <수출보험 메뉴 내 보험/신용보증 이용 시>

\* 수출보험 메뉴 내 단체보험/회수대행/신용조사 항목은 사업메뉴별 정산기준 별도참조



## 4. 비용 인정범위

- 비용 인정범위는 지원사업 목적에 직접 관련된 실 집행금액에 한함
- (공통 정산불가 항목) 아래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정산 불가
  - 수출실적 분류 상 농식품 대상 집행비용만 인정 가능
    - ※ 비농식품은 혼적 구분하여 정산 불인정 혹은 감액 조치
  - 자산구매(유형·무형) 항목 불인정
    - \* (자산성 항목으로 불인정하는 사례) 홈페이지 구축, 쇼핑몰 제작, 앱 개발, 기계류 구입 등
  - 부가가치세 등 제세금 정산 불가(단, 해외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세금 환급 또는 공제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정산가능)
  - 정산기준에 명시하지 아니한 인건비 및 제경비, 출장비
    - \* (인건비) 참여기업의 대표자(또는 직원) 및 바이어에게 지급하는 급여수당 등 (출장비) 항공임 숙박비 등
  - 참여기업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및 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한 경우
  - 아래 정산신청 시 제출증빙으로 인정불가한 집행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 정산기준 상 인정 가능성이 불명확한 비용의 집행은 관할 aT 지역본부 담당자의 사전 확인 및 승인 필요

## 5. 정산신청 시 제출증빙

- 정산신청 시 사업메뉴별 정산기준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정산 증빙서류는 국문 혹은 영문 표기 후 제출(증빙서류용 별도 번역비 지원 불가)
  - (기본 증빙유형) 정산신청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인보이스, 집행증빙 등
    - \* 필요 시 결과물 실물 또는 결과물 제작 여부 확인가능한 전자파일 제출 포함
  - (정산 증빙자료 제출방법) 스캔 후 PDF 등의 전자문서로 시스템에 등록
    - ※ 수출신고필증은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자료로 제출 원칙(필요 시 스캔본 제출 허용 가능)

- (인정가능한 집행방식) 계좌이체 및 카드결제
  - ※ 무통장입금 및 현금, 매출채권(어음, 외상 등) 집행은 인정 불가
  - ※ 계좌이체 시 법인명의 계좌 사용 원칙(참여기업 거래처 동일)
  - ※ 카드결제 시 법인명의 카드 사용이 원칙(개인카드 사용 후 비용처리 인정불가)
  - ※ 물건 등과의 각종 상계 방식으로 비용 집행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
  - ※ 세금계산서는 승인번호가 부여된 것, 국세청에서 유효한 세금계산서로 조회되는 것만 인정 가능
  - ※ 정산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제공동의 필수
    - \* [aT]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 [참여기업]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취소) 사실 발생 시 알림
  - ※ 간이 영수증은 불인정

## 6. 해외집행

- 송금을 통한 비용집행 시 법인명의 계좌로의 송금이 원칙
  - 외환거래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 계좌로 송금해야 하는 경우 관할 aT지역본부 담당자의 사전 승인 필요
- 환율 적용기준
  - 송금증 상 환율이 명시된 경우 해당 환율 적용
  - 외환계좌를 통한 입금으로 송금증 상 환율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송금일 기준 하나은행 '최초고시 송금 보낼 때' 환율 적용
    - \* 하나은행 사이트 접속 → 환율 → 환율/외화예금 금리 → 현재환율 → 고시회차(최초) 선택 → 조회 → 송금 보낼 때 기준 환율 적용
  - 환율증빙 없는 경우, 행사기간 평균 하나은행 '최초고시 송금 보낼 때' 환율 적용
    - \* 사업기간(행사시작일~행사종료일) 중 KEB하나은행 최초고시 송금 보내실 때 기간평균환율(단, 정산신청일은 협약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하나은행 사이트 접속 → 환율 → 환율/외화예금 금리 → 평균환율(기간평균, 최초고시) 검색 → 조회 → 송금 보낼 때 기준 환율 적용

## 7. 사업추진을 위한 계약 시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업체, 사업장 미보유 등 단순한 개인(전문가, 프리랜서 등)과는 계약 불가
  - \* 해외 업체와 거래한 경우, 현지 국가에서 법인임을 확인 가능한 공식 서류 제출
  - \* 단, aT 제공 수출컨설팅 전문 수행기관 리스트에 포함된 전문위원(프리랜서)과는 계약 가능
- 참여기업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및 단체와는 계약 불가

## 8. 중복지원 제한

-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정산받은 동일한 증빙으로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으며, 위반 확인 시 환수 등 제재 조치
  - 참여기업이 타 기관 및 지자체 등의 사업을 통해 비용을 일부라도 중복 지원받은 경우, 패키지 지원사업을 비롯한 타 지원사업에 동일 증빙으로 정산 신청하여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 추후 이중 지원 등이 적발 될 시에는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사업 참여제한 및 보조금 환수, 수사기관 수사 의뢰 등의 불이익 발생 할 수 있음
- 동일 증빙으로 복수의 패키지 사업메뉴에서 중복 또는 분할하여 정산 불가
  - ※ 이 외의 중복제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공고 및 정산 기준 참조

## 9. 기타사항

-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운영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 기타 관계 법령을 따름

## 붙임 4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공모형) 선정평가 기준

### □ 계량평가 (100점)

○ 기업별 제출서류를 근거로 담당 부서에서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점수				
			1,000만\$ 이상	100만\$ 이상~ 1,000만\$ 미만	20만\$ 이상~ 100만\$ 미만	0\$ 초과~ 20만불\$ 미만	없음
수출 경쟁력	○ 수출 금액(USD) * 최근 3년간('23~'25) 가중평균 - '25년 50%, '24년 30%, '23년 20%	20	1,000만\$ 이상	100만\$ 이상~ 1,000만\$ 미만	20만\$ 이상~ 100만\$ 미만	0\$ 초과~ 20만불\$ 미만	없음
			20	18	16	14	12
	○ 수출 금액 증가율(%) * 최근 2개년 ('24~'25) 증가율	20	15% 이상	10% 이상~ 15% 미만	5% 이상~ 10% 미만	0% 초과~ 5% 미만	동일 또는 감소
			20	18	16	14	12
	○ 시장 다변화 * '25년 수출 국가수	20	4개국이상	3개국	2개국	1개국	없음
			20	18	16	14	12
	○ 수출 연속성 * 연속 수출 여부 평가	20	4년 (`22~`25)	3년 (`23~`25)	2년 (`24,`25)	1년 (`25)	없음
			20	18	16	14	12
제품 경쟁력	○ 매출액(원) * '25년 기준	10	500억 이상	100억 이상~ 500억 미만	50억 이상~ 100억 미만	10억 이상~ 50억 미만	10억 미만
			10	8	6	4	2
	○ 매출액 증가율 *{( '25년 매출액)-( '24년 매출액)/ '24년 매출액} * 100	10	30% 이상	20% 이상~ 30% 미만	10% 이상~ 20% 미만	0% 초과~ 10% 미만	0%이하
			10	8	6	4	2
계		100					

○ 가점 (최대 15점)

항목	점수	세부사항
가점	5점	○ 「하반기 물가안정 대책」 관련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할인지원에 참여한 기업
	5점	○ 신선 농산물 수출기업 (참고2 지정품목)
	5점	○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회원사 중 생산자

## 붙임 5 무역통계제공 동의서 온라인 제출 방법

□ 무역통계제공 동의서 온라인 제출방법 \*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 필요

### 1. TmyDATA 플랫폼 접속

※ 일반접속: <https://tmydata.or.kr> ▶ 마이데이터 ▶ 데이터 전송하기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전략처 ▶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선택

※ 전용 URL: <https://tmydata.or.kr/mydata/send/index?t=1601&c=721&general=true>

### 2. 사업자 번호 입력 후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인증 ※회원가입 불필요

### 3. 필수 전송항목 체크

**마이데이터**

데이터 전송

- 데이터 전송하기
- 동의 변경하기
- 전송내역
- 동의내역

데이터 연결

MyTransQ

#### 전송 항목선택

1. 전송 기관선택
2. 전송 항목선택
3. 전송 동의
4. 전송 완료

**동의 내용**

! 관세청 통계계산 제외물품은 증명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의목적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추진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선택 동의일로부터 5년
자료조회 기간	2012-01-01 ~ 2030-01-31		
전송일자	선택 매월 <input type="radio"/> 1일 <input checked="" type="radio"/> 5일 <input type="radio"/> 15일 <input type="radio"/> 1일,15일 <input type="radio"/> 수시		
전송기간	2025-02-20 ~ 2030-01-31		
수출업구분	<input type="radio"/> 전체 <input checked="" type="radio"/> 수출 <input type="radio"/> 수입		
데이터기준	<input type="radio"/> 연월간 집계 <input checked="" type="radio"/> 신고건별		
조회기간 기준	<input type="radio"/> 수리일 <input type="radio"/> 신고일 <input checked="" type="radio"/> 출원일		
사업자 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수출자 <input type="radio"/> 제조자 <input type="radio"/> 수출자+제조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수 동의항목	기본동의 수출신고번호, 신고일자, 수리일자, 선적일자, 수출대행자상호, 수출대행자 사업자번호, 제조자상호, 제조자사업자등록번호, 목적 국가코드, 운송수단유형코드, 적재항구공명코드, 원산지증명서발급항정, AG코드명, HS10단위부호, 운송량, 신고이력가액, 신고 원화가액		
<input type="checkbox"/> 선택 동의항목	선택동의		

다음

### 4. 열람·이용 동의 및 전송요청

**마이데이터**

데이터 전송

- 데이터 전송하기
- 동의 변경하기
- 전송내역
- 동의내역

데이터 연결

MyTransQ

#### 전송 동의

1. 전송 기관선택
2. 전송 항목선택
3. 전송 동의
4. 전송 완료

**전송 동의서**

전송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전략사	동의목적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추진 목적
동의일자	2025-02-27	전송주기	정기 전송
전송일자	매월, 5일	전송기간	2025-02-20 ~ 2030-01-31
자료조회 기간	2012-01-01 ~ 2030-01-31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5년
필수 동의항목	기본동의 수출신고번호, 신고일자, 수리일자, 선적일자, 수출대행자상호, 수출대행자 사업자번호, 제조자상호, 제조자사업자등록번호, 목적 국가코드, 운송수단유형코드, 적재항구공명코드, 원산지증명서발급항정, AG코드명, HS10단위부호, 운송량, 신고이력가액, 신고 원화가액		

**[필수] 전송 및 열람·이용 동의 안내** 내용보기

1. 수출입 신고정보는 본 동의서 제출을 통해 귀사가 열람·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수출입 신고정보를 열람·이용하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정보주체가 전송기관으로의 정보 전송 및 열람·이용 동의 권한을 지정한 시점까지입니다.
3. 귀사가 전송기관으로 정보제공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언제든지 변경·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단, 1회 전송 및 전송한 내역의 경우 동의철회가 불가하며, 전송기관이 플랫폼 이용을 중지하는 경우 정기전송 동의내역은 착권 철회됩니다.)
4. 귀사는 본 정보 및 열람·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으며 업무 편의를 제공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내용에 대한 본인 권리에 대해 이해하였으며, 위 자료의 전송 요청 및 전송기관이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전송하기

## 5.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

**인증서 선택**

저장매체를 선택하세요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하세요

상태	구분	사용자	발급자	만료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자(공동)			

인증서 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

1. 수출입신고정보는 본 동의서 제출을 통해 귀사가 열람·이용을 동의한 전송기관에 관해 제공되며, 사후 언제든지 그 열람·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수출입 신고정보를 열람·이용하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정보주체가 전송기관의 정보 열람·이용 동의 권한을 지정한 시점 또는 동의를 철회하는 시점까지입니다. (단, 3회 전송의 경우 동의 철회 불가)  
 3. 귀사는 본 정보 열람·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으며 업무편의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내용에 대한 본인 권리에 대해 이해하였으며, 위 자료의 전송요청 및 전송기관이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6. 전송 완료

**마이데이터**

마이증명서 마이데이터 마이서비스 고객지원

로그아웃 마이페이지

**마이데이터**

데이터 전송

- 데이터 전송하기
- 동의 변경하기
- 전송내역
- 동의내역

데이터 연결

**전송 완료**

전송 기관선택 전송 항목선택 전송 동의 전송 완료

**데이터 전송 완료**

내역 확인은 "전송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내역의 경우 전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붙임 6

## 신선농산물 등 인정 품목 및 HS코드

### 1 과실류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감귤	0805-21-1000	자두(신선)	0809-40-1000
만다린 (탄제린·세트수머 포함/신선·건조한 것)	0805-21-9000	키위푸르트(신선)	0810-50-0000
기타 (감귤류의 과실/신선·건조한 것)	0805-90-0000	단감(신선)	0810-70-1000
포도(신선)	0806-10-0000	매실(신선)	0810-90-5000
사과(신선)	0808-10-0000	그 밖의 과실(기타/신선한 것)	0810-90-9000
배(신선)	0808-30-0000	과실, 견과류 (생동/초본류딸기, 나무딸기, 밤, 대추, 잣 등 이외 기타)	0811-90-9000
살구(신선)	0809-10-0000	감귤류의 껍질	0814-00-1000
복숭아(넥타린 포함/신선)	0809-30-0000		

### 2 화훼류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장미(접목 여부 불문)	0602-40-0000	카네이션(절화/신선)	0603-12-0000
난초(산식물)	0602-90-1010	심비디움(절화/신선)	0603-13-1000
국화	0602-90-1050	팔레놉시스(절화/신선)	0603-13-2000
선인장류(산식물)	0602-90-1060	기타 난류(절화/신선)	0603-13-9000
기타 화훼류	0602-90-1090	국화(절화/신선)	0603-14-0000
기타산식물	0602-90-9090	백합(릴리움종)	0603-15-0000
장미(절화/신선)	0603-11-0000	튤립(절화/신선)	0603-19-1000
		기타 절화(신선)	0603-19-9000

### 3 버섯류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버섯의 종균	0602-90-9040	기타버섯(신선/냉장)	0709-59-9000
양송이 버섯(신선·냉장한 것)	0709-51-7000	양송이 버섯(건조)	0712-31-1000
큰느타리버섯(신선,냉장)	0709-59-4010	느타리버섯(건조)	0712-39-1040
기타 버섯(신선,냉장)	0709-59-4090	팽이버섯(건조)	0712-39-1050
팽이버섯(신선/냉장)	0709-59-5000	기타버섯(건조)	0712-39-1090

#### 4] 채소류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감자(종자용 이외 기타)	0701-90-0000	시금치류(신선 냉장)	0709-70-0000
방울토마토	0702-00-1000	호박류(큐러비종)(신선 또는 냉장)	0709-93-0000
토마토(기타 신선 냉장)	0702-00-9000	깻잎	0709-99-3000
양파(껍질을 벗긴 것)	0703-10-1010	기타의 채소의 기타 (신선 또는 냉장)	0709-99-9000
양파(기타)	0703-10-1090	채소류의 혼합물(냉동)	0710-90-0000
마늘(탈피한 것)	0703-20-1000	기타채소(일시저장처리)	0711-90-5099
마늘(기타)	0703-20-9000	무(건조)	0712-90-2020
대파	0703-90-2000	기타채소(건조)	0712-90-2099
쪽파	0703-90-3000	고구마(신선)	0714-20-1000
파속채소(기타양파쪽파마늘류외)	0703-90-9000	서류(기타)	0714-90-9090
꽃양배추, 브로콜리(신선 냉장)	0704-10-0000	수박(신선)	0807-11-0000
양배추(신선 냉장)	0704-90-1000	참외	0807-19-1000
배추(신선 냉장)	0704-90-2000	멜론류 기타	0807-19-9000
결구상치(신선 냉장)	0705-11-0000	초본류 딸기(신선)	0810-10-0000
상치(결구상치 이외 기타)(신선 냉장)	0705-19-0000	초본류 딸기(냉동)	0811-10-0000
당근(신선 냉장)	0706-10-1000	양파종자	1209-91-1010
무(신선 냉장)	0706-90-1000	기타(파속종자)	1209-91-1090
고추냉이와 겨자무	0706-90-2000	무종자	1209-91-2000
오이류(신선 냉장)	0707-00-0000	고추·단고추 및 착색단고추류의 종자	1209-91-3000
콩(비그나 패세라스)(신선 냉장)	0708-20-0000	양배추 종자	1209-91-4000
아스파라거스(신선 냉장)	0709-20-0000	토마토 종자	1209-91-5000
가지(신선 냉장)	0709-30-0000	기타(채소종자)	1209-91-9000
단고추(벨터입제한한다)	0709-60-1000	파종용의 종자, 과실 포자(기타)	1209-99-9000
기타(고추류)	0709-60-9000	한약재(기타)향료 의약품 등	1211-90-9090

#### 5] 김치류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채소, 채소 혼합물(기타)	2004-90-9000	김치(냉동하지 않은 것)	2005-99-1000

6 축산물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돼지(중돈)	0103-10-0000	돼지고기(냉동/기타/기타)	0203-29-9000
쇠고기 (신선,냉장/도체, 이분도체)	0201-10-0000	면양고기 (어린 면양/신선·냉장/도체와 이분도체)	0204-10-0000
쇠고기 (신선·냉장/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갈비)	0201-20-1000	돼지고기(식용설육/간장/냉동)	0206-41-0000
쇠고기 (신선·냉장/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기타)	0201-20-9000	돼지고기(식용설육/족/냉동)	0206-49-1000
쇠고기 (신선,냉장/뼈 없는 것)	0201-30-0000	돼지고기식용설육(기타/냉동)	0206-49-9000
쇠고기 (냉동/도체, 이분도체)	0202-10-0000	닭고기 (절단하지 않은 육 /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11-0000
쇠고기 (냉동/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갈비)	0202-20-1000	닭고기 (절단하지 않은 육)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12-0000
쇠고기 (냉동/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기타)	0202-20-9000	닭고기(절단육)	0207-13-1000
쇠고기 (냉동/뼈 없는것)	0202-30-0000	닭간장(냉장)	0207-13-2010
돼지고기 (신선, 냉장/도체, 이분도체)	0203-11-0000	닭기타 설육(냉장)	0207-13-2090
돼지고기 (신선·냉장, 냉동/넓적다리살· 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	0203-12-0000	닭다리(냉동)	0207-14-1010
돼지고기 (신선,냉장/기타/삼겹살)	0203-19-1000	닭가슴(냉동)	0207-14-1020
돼지고기 (신선,냉장/기타/기타)	0203-19-9000	닭날개(냉동)	0207-14-1030
돼지고기 (냉동/도체, 이분도체)	0203-21-0000	닭기타절단육(냉동)	0207-14-1090
돼지고기 (냉동/넓적다리, 어깨살 뼈채절단)	0203-22-0000	닭간장(냉동)	0207-14-2010
돼지고기(냉동/기타/삼겹살)	0203-29-1000	오리의 것 (신선·냉장/절단하지 않은 육)	0207-41-0000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오리 절단육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7-44-1000	조란 (껍질 붙지 않은 것/건조한 것)	0408-91-0000
오리 간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7-44-2010	조란기타	0408-99-9000
오리 기타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7-44-2090	장(기타동물)	0504-00-1090
오리 절단육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7-45-1000	닭고기(기타조제저장)	1602-32-9000
오리 간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7-45-2010	돼지고기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밀폐용기에 넣은 것)	1602-41-1000
오리 기타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7-45-2090	돼지고기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1602-41-9000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 (기름을 빼지 않은 것/신선·냉장· 냉동·염장·염수장·건조·훈제한 것)	0209-10-0000	돼지고기 (어깨살과 그 절단육/밀폐용기에 넣은 것)	1602-42-1000
오리의 것 (냉동/절단하지 않은 육)	0207-42-0000	돼지고기 (어깨살과 그 절단육/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1602-42-9000
오리 지방간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7-43-0000	돼지고기 (기타/혼합물 포함/밀폐용기에 넣은 것)	1602-49-1000
신선란(닭의 것)	0407-21-0000	돼지고기 (기타/혼합물 포함/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1602-49-9000
기타의 신선란(기타)	0407-90-0000		